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284642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심용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 박상철, 양창길

변 론 종 결 2021. 4. 6.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 2층에서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직원 E은 2020. 6. 10.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F'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1,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31,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과정에서 피고가 D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의 명함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송부받았다.

다. E은 피고 명의의 G증권 계좌번호(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받아 2020. 6. 10. 오후 12시 50분경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계좌로 모두 입고하였는데, 그 직후 이 사건 주식 927주가 소외 I에게 25,490,000원에 처분되어 이 사건 계좌로 25,49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위 금원 중 22,000,000원이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출금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0. 6. 10. 오후 3시 30경 피고의 처남으로서 D의 재무 및 자금담당 이사인 L을 만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L 및 피고로부터 명의를 도용되었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1. 피고와 L을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마. L은 2020. 6. 22. 경찰 조사과정에서 "2020. 6.경 회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이버 카페 '급매물'에서 투자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거래를 하면 투자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달 10.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로 주식 1,000주를 보냈으니 이 중 927주를 자기가 알려준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이를 보냈으며, 927주에 해당하는 주식대금 25,49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금원 중 22,000,000원을 J 명의의 K조합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2020. 6. 22.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주식 계좌를 만들어 몇 번 주식거래를 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 및 L에 대한 위 고소사건은 참고인중지된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불상의 대출알선자에게 제공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및 처분대금을 이체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출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출알선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주식 매매과정에서 피고 명의 명함을 제공받은 후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대표이사가 피고임을 확인하고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회사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 직원인 듯한 사람(L으로 보인다)과 피고가 대표이사이고 자택주소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계좌에 입고 후 피고 직원인 L이 E에게 입고되었음을 확인하는 전화까지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L과 공모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불상의 대출알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출알선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고 한 성명불상자(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의뢰한 사람과 같은 사람 또는 그 일행으로 보인다.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받은 후 이를 타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즉 위 매매대금 상당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판결 등 참조).

3) 피고 및 L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행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제3호) 등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위 각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관련 법령 등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나 L은 불법행위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을 뿐 그에게 통장 자체나 비밀번호,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나 L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나아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 및 원고 직원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하고 피고 계좌나 명함 등을 송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하도록 한 사람은 피고나 L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나 L은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종전부터 거래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 전혀 알지 못하였던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도록 계좌번호와 명함을 전달하여 준 점, E이 피고와의 거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을 때 L은 피고가 D의 대표이사임을 직접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고, 직접 주식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대출 등의 알선을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유도하여 통장 등을 교부받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고 피고나 L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나 투자가 어려운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나 L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방법이 정상적이라거나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나 L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나 L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6)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는 L과 공모하여 대출알선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